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인감증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(정부24) 발급을 허용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 통한 발급 허용(안 제13조,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)

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부동산 등기, 금융기관 제출 목적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에 한해 통합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 통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본인인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추가(안 제7조)

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서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「주민등록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추가함.

다.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(안 제19조)

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하고,
통합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면제하며,
증명청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인감화일”을 “인감파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감화일”를 “인감파일”로, “인감화일은 손상전”을 “인감파일은 손상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감화일”을 “인감파일”로, “화일목록”을 “파일목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, “인감화일”을 “인감파일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

8. 「주민등록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

제10조제7호 중 “인감화일”을 “인감파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인감을 신고한 자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하며, 제출용도와 제출기관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

“날인한”을 “날인한 경우와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은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.

⑧ 전자민원창구를 관리·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제5호 및 제4항제5호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다)”를 “전자민원창구”로, “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”을 “각 호의 사항을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「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를 “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독립유공자등과 유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”을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에 한정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”을 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(선순위자에 한한다)”를 “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”로 하

며, 같은 항 제13호 중 “(선순위자로 한정한다)”를 “(선순위자만 해당하
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
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
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
발급한 경우

③ 증명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
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별지 제14호서식 제1호,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
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제8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문자로 즉시”를
“문자 등으로”로 하며, 제4호(종전의 제5호)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이 경우 매수자가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, 부동
산등기용등록번호, 그 단체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.

제6호(종전의 제8호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9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
호(종전의 제9호) 중 “전자민원창구(www.minwon.go.kr)를”을 “전자민
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(www.gov.kr) 또는 정부24 앱을”로 한다.

6. 비고란에는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
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,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
호를 기재하며,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
항을 기재하면 됩니다.

제7호를 삭제한다.

제10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	-	-
신청인:	(생년월일:	), 담당자: (전화:

※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

주민등록 번호						-	인 감 증 명 서	본인	대리인
성명 (한자)	()							인감	
국적									
주소									
용 도	매 도 용	[] 부동산 매수자, [] 자동차 매수자							
		성 명 (법인명)	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-		
		주 소 (법인·사업장 소재지)							
	일 반 용	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. (발급신청자) (서명)							
비고									
1.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○표시됩니다. 2.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,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()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 3.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. 4. 부동산 또는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)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매수자가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,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, 그 단체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. 다만,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"빈칸"으로 표시됩니다. 5. 용도의 일반용란은 '은행대출용', '○○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'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 6. 비고란에는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,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. 7.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(www.gov.kr) 또는 정부24 앱을 통하여 「발급일,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, 주민등록번호, 발급기관」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8.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									
발급번호			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.						
년 월 일 ○○시·군·구·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 직인									

문서확인번호	-	-
신청인:	(생년월일:)	담당자: (전화:)

주민등록 번호	인 감 증 명 서 (전 자 민 원 창 구 용)			
성명 (한자)	()		인감	
국적				
주소				
일 반 용	제출용도		제출기관	
	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.			
	발급신청자 (서명)			
비고				
1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전자민원창구(www.gov.kr)를 이용하여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, 부동산 등기용,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 가. 부동산 등기용은 부동산 매매·증여·교환·상속 등의 등기, 근저당권·전세권·임차권·지역권·지상권 설정 등에 관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나. 금융기관 제출용은 예금, 대출, 보험,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관련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2.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,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()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 3.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 4. 전자민원창구(www.gov.kr)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용도 및 제출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,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사실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5. 제출용도란에는 '행정기관 제출용', '임원 취임 승낙', '경력 증명'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. 6.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(www.gov.kr) 또는 정부24 앱을 통하여 위 문서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(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)을 할 수 있습니다. 7. 직인의 날인은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,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.				
발급번호	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.			
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자치구청장 직인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)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<u>인감화일</u> (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·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	제5조의2(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) ① ----- ----- --- <u>인감파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<u>인감화일</u> 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<u>인감화일은 손상전</u> 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인감파일</u> ----- ----- <u>인감파일은 손상 전</u> ----- -----.
③ 증명청은 <u>인감화일</u> 을 작성·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<u>화일목록</u> 에 등재하여야 하며, 그 보관·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	③ ----- <u>인감파일</u> ----- ----- -- <u>파일목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것 외에 인감화일의 입력·출력
· 편집·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
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
다.

제7조(방문에 의한 인감신고) ①

· ② (생략)

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
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
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(이
하 “주민등록증등”이라 한다)으
로 확인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④ ~ ⑦ (생략)

제10조(신고수리의 거부) 증명청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
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
다.

1. ~ 6. (생략)

7.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

----- 인감과일-----

제7조(방문에 의한 인감신고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1조
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

8. 「주민등록법」 제25조제2항
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신고수리의 거부)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인하여 <u>인감화일</u>에 수록하기 에 부적합한 때 8. (생 략) 제13조(인감증명서의 발급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----- <u>인감과일</u>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인감증명서의 발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인감을 신고한 자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 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 구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 다)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하며, 제출용도와 제출기 관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 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
③ (생 략)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 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	

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⑤ (생략)

⑥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

_____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은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. -----

----- 날인한 경우와
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-----

보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)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다)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9조(수수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「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전자민원창구를 관리·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제5호 및 제4항제5호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) -----

----- 전자민원창구-----

---- 각 호의 사항을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제1항에 따른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-----

록된 <u>독립유공자등과 유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</u>이 신청하는 경우	-- <u>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에 한정한다)</u>----- --
7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<u>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에 한한다)</u>이 신청한 경우	7. ----- ----- ----- <u>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</u>----- --
8. · 9. (생략)	8. · 9. (현행과 같음)
10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<u>선순위자에 한한다</u>)이 신청하는 경우	10. ----- ----- ----- -----(<u>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</u>)----- --
11. · 12. (생략)	11. · 12. (현행과 같음)
1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<u>선순위자로</u>	13. ----- ----- ----- -----(<u>선순위자만</u>

<u>한정한다</u>)이 신청하는 경우 1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</u>-- -- 14. (현행과 같음) 15.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<u>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</u> ③ <u>증명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주민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152